

제232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11. 6.(서면심의)

□ 안건명 :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과업내용서에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분석하고, 악취에 따른 관리계획 추가 검토
- 제1건조시설 필요 전력을 기존 물재생센터내에서 공급하여야 하므로 기존 시설 조사 및 전력공급계획이 중요함에 따라 전기분야 내용에 ‘수전 및 변전 설비’를 ‘전력공급계획, 수전 및 변전설비’로 수정
- 시설현대화 2-2단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2-1단계까지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시설현대화 2단계화 연계성이 필요함
-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계획에 다음 추가 ‘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, 지질 등의 자연현황, 주변도로,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’
- 건조시설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로써 에너지 절감방안(건조배가스 폐열회수,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) 추가 검토

첨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안건명 : 제232차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전기전력	<p>1. 과업내용서는 전반적으로 잘 작성 되었고, 다음 사항을 보완 바람</p> <p>(1) 24쪽 ④ 전기분야의 내용에 “수전 및 변전설비”를 “<u>전력공급계획, 수전 및 변전설비</u>”로 수정</p> <p>(제1 건조시설 필요 전력을 기존 물재생센터내에서 공급하여야 하므로 기존 시설 조사 및 전력공급계획 중요함)</p> <p>(2) 24쪽 14) 운영시스템 계획에서 “제1, 2 건조시설 운영시스템 계획을 설계에 제시”를 “<u>기존 제 1, 2 건조시설 운영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운영시스템 계획을 설계에 제시</u>”로 수정</p> <p>(현재 제 1, 2 건조시설은 운영중이므로 운영시스템을 조사하여 개선되는 제1 건조시설 운영시스템 설치시 제2 건조시설 운영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계획하는게 중요함)</p> <p>(3) 25쪽 16) 환경 및 기타 인허가 검토에서 “인허가 사항” 문구를 “<u>인허가 사항</u>”로 수정</p> <p>(4) 27쪽 제5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에서 “기존처리장 운영현황조사”를 “<u>기존 물재생센터 운영현황조사</u>”로 수정</p>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안건명 : 제232차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p>1. 에너지 절감방안 검토 (1) 건조시설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로써, 에너지 절감방안(건조배가스 폐열회수,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) 추가를 검토 바랍니다.</p> <p>2. 건조시설 계열수 검토 (1) 건조시설의 기술성, 경제성,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조시설의 계열수 검토 바랍니다.</p> <p>3. 백연 최소화 방안 검토 (1) 도심에 위치한 사업부지 여건을 감안하여 백연 최소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.</p> <p>4. 악취 최소화 방안 검토 (1)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종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적정처리방안과 시설기준(환기횟수, 배출기준 등)을 검토 바랍니다.</p> <p>5. 건조응축수 연계처리 검토 (1)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부산물인 건조 응축수 등 폐수의 발생량과 오염부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처리방안을 검토 바랍니다.</p>	
종합의견	전반적으로 과업내용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용역비 예산과 과업기간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안건명 : 제232차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기계	<p>○ 1.2 과업의 배경 및 목적/ 1.2.1 과업의 배경(p 1)</p> <p>4) 시설현대화 2단계와 연계성 필요</p> <p>향후 시설현대화 2-2단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처리하는 계획으로 제1 슬러지 건조시설도 연계하여 지하화 등 개선안 검토가 필요하다.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시설현대화 2-2단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2-1단계까지 고려한 검토 필요</p> <p>○ 1.2 과업의 배경 및 목적/ 1.2.2 과업의 목적(p 1~2)</p> <p>1) ‘중량물재생센터 제1건조시설 개선 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’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건조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과업의 목적 구체화 (하기 내용 추가 포함)</p> <p>제1 건조시설에 대한 기존시설 리모델링, 증설 및 지하화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슬러지 건조시설의 최적 개선안을 도출</p> <p>○ 1.3.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의 범위</p> <p>2) 타당성 조사</p> <p>⑤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한 지하화 검토</p> <p>3) 기본계획수립</p> <p>④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한 시설물 배치계획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2) 타당성 조사 ⑤ 시설현대화 2-2단계를 2단계로 변경</p> <p>3) 기본계획수립 ④ 시설현대화 2-2단계를 2단계로 변경</p>	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p>○ 1.3.3 과업기간(p 3)</p> <p>1)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(국·공휴일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포함)로 한다.</p> <p>2)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1) 일반적으로 과업기간 1년이며, 국·공휴일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포함이라는 문구 삭제 검토 :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</p> <p>2) 위임을 받은자 : 별도 선정할 계획인가? 없다면 삭제 검토</p> <p>○ 1.5.2 착수신고서 제출(p 4)</p> <p>1) ~~~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① 기술용역예정공정표</p> <p>② 인력투입계획서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착수신고서 내용에 다음사항 추가 반영 검토</p> <p>① 기술용역예정공정표</p> <p>②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</p> <p>③ 공동계약이행계획서(공동계약의 경우)</p> <p>④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</p> <p>○ 1.6.2 용역점검(p 7)</p> <p>1)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문구수정 필요</p> <p>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: 삭제</p> <p>- ~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,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</p>	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역감독자를 별도로 선정하는가? - 용역의 완성검사 관련 내용 추가반영 검토 - 용역목적물 인수와 관련 내용 추가반영 검토 <p>○ 1.10 과업내용 변경/ 1.10.1 과업내용 변경 조건(p 10)</p> <p>2)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,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<u>용역감독자</u>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[검토의견] 용역감독자를 별도 선정하는가? 선정하지 않는다면 내용 삭제</p> <p>○ 1.13 적용기준(p 11~12)</p> <p>1)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등에 의하되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한다.</p> <p>④ 관련법령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건설기술진흥법,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, 환경정책기본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,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, 대기환경보전법, 악취방지법,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소음·진동 관리법, 하수도법, 폐기물관리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소방기본법, 항공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전기사업법, 전기공사업법, 주차장법,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건설산업기본법,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, 환경영향평가법, 행정절차법 등 제반법규, 환경 관련 조례,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국토건설종합계획,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</p> <p>[검토의견]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여부 재검토 시설규모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적용여부 신중히 검토 필요함</p>	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p>○2.3 타당성조사 주요내용(p 15~16)</p> <p>5)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안 지하화 검토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(2-2단계)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배치하는 설계내용을 파악하고,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[검토의견] 시설현대화 2-2단계를 2단계로 변경 시설현대화 2-2단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2-1단계까지 고려한 검토 필요</p> <p>○3.1 설계지표의 검토(p 17)</p> <p>계약상대자는 타당성 검토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.</p> <p>6)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계획</p> <p>[검토의견] 시설현대화 2-2단계를 2단계로 변경 시설현대화 2-2단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2-1단계까지 고려한 검토 필요</p> <p>○3.2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계획(p 23)</p> <p>9)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증설계획 제1 건조시설 개선안이 리모델링(노후설비 교체 등)과 증설방안으로 결정될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10) 시설현대화 2-2단계와 연계계획 제1 건조시설 개선안이 시설현대화(2-2단계)와 연계되는 방안으로 결정될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[검토의견]</p> <p>9)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증설 또는 신설계획으로 변경 검토 - 신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함</p> <p>10) 시설현대화 2단계와 연계계획으로 변경 검토 - 시설현대화 2-2단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보다는 2-1단계까지 고려한 검토 필요</p>	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(p 27) <p>[검토의견]</p> <p>과업수행기간 12개월로 변경 검토</p>	
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조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이 부족으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를 전량 처리하는데, 어려움이 있어 건조시설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한 실정임 ○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(리모델링 또는 신설포함)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2단계 연계검토가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○ 용역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업수행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안건명 : 제232차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토목구조	<p>제3장 기본계획수립 3.2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계획체(추가 사항) 00)현지조사</p> <p>①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, 지질 등의 자연현황, 주변도로,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00) 지장물 조사</p> <p>①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, 상·하수도, GAS, CABLE 등 등 부속시설을 조사한다.</p> <p>② 지장물조사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지장물이 구조적 변형 또는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	
종합의견	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안건명 : 제232차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건축 구조	1.과업내용서 11)각 분야별 기본계획 ②건축분야에 KDS 41 00 00 : 2019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준수할 것이라고 추가할 것.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

분 야	채 택 의 견	비 고
총 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업내용서에 악취관리 계획 검토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분석하여 악취에 따른 관리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○ 과업내용서에 다음 사항을 보완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의 범위의 기본계획 수립에 다음 내용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⑩ 향후 장기간 슬러지 발생 예상량 분석(타 기관과의 연계처리 가능성 등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, 예 : 매립지공사 위탁처리 등) ○ (p.17) 3.2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계획 2) 지반조사(토질조사)에 포함된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삭제하기 바람 ○ 지반조사(토질조사)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. -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. -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,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,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. 	
종합의견		

2023년 11월 06일

검토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(서명)